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0 발의연월일: 2024. 6. 13.

발 의 자: 박대출·강대식·강명구

강민국・강선영・강승규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김 건 · 김기웅 · 김기현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김민전 · 김상욱 · 김상훈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김소희 · 김승수 · 김예지

김용태 · 김위상 · 김은혜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김종양 · 김태호 · 김형동

김희정 • 나경원 • 박덕흠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박수민 • 박수영 • 박정하

박정훈 • 박준태 • 박충권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백종헌 • 서명옥 • 서범수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신동욱 • 신성범 • 안상훈

안철수 · 엄태영 · 우재준

유상범·유영하·유용원 윤상현·윤영석·윤재옥 윤한홍·이달희·이만희 이상휘·이성권·이종박 이인선·이종배·이종욱 이철규·이헌승·인요한 임이자·임종득·장동혁 정동만·정성국·정연욱 정점식·정희용·조경태 조배숙·조승환·조은희 조정훈·조지연·최보윤 최수진·최은석·최형두 의원(10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제16조의4 등).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본문 중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각 호,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을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7조의14제1항"을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7조의14제1항"을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제2항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

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금 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A - B - (C - D)

A: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

B: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

C: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

D: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대하여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5제1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소득세법」 제87조의12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97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각각 가입일"을 "배당소득(가입일"로,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

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중 "제외하며,"를 "제외한다."로, "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를 "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할"을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 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 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항 제

2호 중 "금융투자소득세를"을 "양도소득세를"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표준"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투자소득세 또는"을 "양도소득세 또는"으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 전액"으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투자소득세 라세표준"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부분 후단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7의 제목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하는 배당소득및 금융투자소득"을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6항)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의4제14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으로,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를 "9로 하고,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각각 "이자소득과 배당소 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7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을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을 "제17조제1항제5호"로, "배당소득금액 및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과 배 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 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 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 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 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마 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바목) 중 "「소득세법」 제87 조의18제1항제1호가목"을 "「소득세법」 제88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자소득등을"을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 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로, "합한 금액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 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

-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제130조, 제148조의2"를 "제1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9항) 중 "중도해지된"을 "해지된"으로, "제8항"을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3항) 중 "계산방법,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을 "계산방법"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1제1항 중 "「소득세법」 제87조의2제1호 또는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을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으로,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의4 중 "제87조의

6(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같은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한다)"을 "제94조"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28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 중 "「소득세법」 제87조의24 또는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111조"로 한다.

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35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 득과세표준"으로 한다.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6조의2제5항 중 "「소득세법」 제127조제8항"을 "「소득세법」 제127조제7항"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6조의2 제목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징)"을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

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같은 법 제 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를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대한 과세특례)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	
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	
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	
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	
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u>양도로 발생하는</u>	<u>양도에 대해서는</u>
소득은 「소득세법」 제87조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
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호를 적용
<u>포함</u>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
·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	
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	
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	
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	7
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u>대</u> 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 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 다)

- 8. (생략)
- ② · ③ 삭 제
- ④ (생략)
- ⑤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 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 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제17 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 1항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세법 과 「법인세법」에도 불 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 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다 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 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 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 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

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u>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u>
8. (현행과 같음)
♠ (ᅯ체기 가 ♠)
④ (현행과 같음)
⑤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
<u>.</u>
6
<u>제16</u>

조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7조의14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한정한다)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한다.

⑦·⑧ (생 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 례) ① (생 략)
 - 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이하"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를 과

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3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이자소
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
⑦·⑧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
례) ① (현행과 같음)
②
<u>양도하여 발생하</u>
는 양도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세를 과세하는 경우 금융투자소 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벤 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 익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7조의18에 따 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금액 = A - B - (C - D)

- A: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
- B: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
- C: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
- D: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대하여 제16조의2 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
 - ④ ~ ⑥ (생 략)
 - ⑦ 제2항에 따라 <u>금융투자소득</u>
 <u>세</u>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 ⑧ ~ ⑩ (생 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 액으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A - B - (C - D)

- A: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
- B: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
- C: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
- D: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대하여 제16조의2 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

- ④ ~ ⑥ (현행과 같음)
- ⑦ ----- <u>양도소득세</u>---

—

⑧ ~ ⑩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 실용 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산 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거주자가 벤처기업등에 산업재 산권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 에 출자(거주자가 해당 벤처기 업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 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하 고 해당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받은 경우에 그 현물출자에 따 른 이익을 거주자가 해당 주식 을 양도할 때 금융투자소득세로 납부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신청하면 「소득 세법 시21조에도 불구하고 해 당 주식의 취득 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산업

②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산업 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받은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

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u>양도소득세</u>
②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부개정법률

투자소득세를 과세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87 조의1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자한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산업재산권의 취득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에 따른이익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7조의18에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생 략)
- ⑤ 제2항에 따라 <u>금융투자소득</u> 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제4호 및 제7호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 ⑥ (생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
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③ <u>양도소득세</u>
<u>「소득세법」 제97조</u>
<후단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⑤ 양도소득세
<u>87744</u>
⑥ (현행과 같음)
그는 케크이앤지수 크게 트웨이터 네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 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 특례) ①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 좌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 시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각각 가입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 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 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 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 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 한다.

- 1. ~ 3. (생 략)
- ② (생략)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가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 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금융 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
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배당소득(가
입일
<u> </u>
<u>같은 법 제14</u>
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
<u> 표준</u>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 4를 적용한다.

④ (생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 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 시41조제2항에 따른 투 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 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 합투자기구는 <u>제외하며</u>,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 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 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 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 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일부개정법률	<u>③</u>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 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일부개정법률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
로부터 받는 배당소 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 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로부터 받는 배당소 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 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로부터 받는 배당소 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 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로부터 받는 배당소 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 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로부터 받는 배당소 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 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로부터 받는 배당소 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 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로부터 받는 배당소 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 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로부터 받는 배당소 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 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로부터 받는 배당소 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 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로부터 받는 배당소 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 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외한다
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 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 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로부터 받는 배당소
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법 제129조제1항제9호에도 불 구하고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 <u>용</u>한다.

- 1. (생략)
- 2.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융자집 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_ 제 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 권에 투자할 것
- 3.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가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 하여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 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 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 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 다.

③ (생 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1. (현행과 같음)
2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
반을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 에 대한 과세 특례) ① -----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 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 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 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 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 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 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 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 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 다.

1. ~ 3. (생 략)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호

<u>양도소득세</u>
1. ~ 3. (현행과 같음)
②

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하며,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하며,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항에 따라 과세를이연받은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③ ④ (생 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

<u>양도소득세</u>
1.・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세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
한 과세특례) ①

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이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수 있다.

1. · 2. (생략)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 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 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 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 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

<u>양도소득세</u>
1. • 2. (현행과 같음)
②

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 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 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 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금융투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 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 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 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 1. ~ 3. (생략)
- ③ (생략)
- 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u>양도소득</u>
<u>세</u>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4
<u>양도소득세</u>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 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 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⑤・⑥ (생 략)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9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 <u>양도소득세</u>
⑤·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
한 과세특례) ①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 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 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 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센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 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 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 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 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 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 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

<u>양도소득세</u> -
1.・2. (현행과 같음)
②

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 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 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 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 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투 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 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 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 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 으로 본다.

- 1. ~ 3.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u>금융</u> <u>투자소득세</u> 또는 법인세의 과세 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 1. (생략)
- 2. 거주자: <u>금융투자소득세를</u> 양 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 확

<u>양도소</u>
<u> 득세</u>
1. ~ 3. (현행과 같음)
③
소득세
1. (현행과 같음)
2 <u>양도소득세를</u>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 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 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 한다.

④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납부하기 전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 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 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 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주식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금 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 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등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4
양도소득세 또는
<u>양</u>
도소득세 과세표준
⑤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 익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u>금융</u> 투자소득세 전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u>금</u> 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 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⑥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 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 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 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 환함에 따라 양도차익 과세 또 는 금융투자소득세 납부를 이연 받은 주주가 2029년 12월 31일 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 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 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 가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 전액
<u>%</u>
도소득세 과세표준
1. ~ 4. (현행과 같음) ⑥
<u>양도소득세</u>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 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 한 것으로 본다.

(7)· (8) (생 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26년 12월 3 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

⑦·⑧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양도소득세</u> -
1
<u>양도소득세</u>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생 략)

④ ~ ⑧ (생 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 라 한다)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 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2 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 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 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 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 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

2.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 2. (생략)

- ② (생 략)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교환대상법인의 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거나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

소득세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9 ED)
양도소득
세

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할 세액으로 본다.

1. • 2. (생략)

④ ~ ⑥ (생 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 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주식회사인 법인 (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 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 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 휴법인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 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 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벤처기업 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 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

1. • 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
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 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 (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벤 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u>금융투자소득</u> 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제휴법인 의 주주는 제1항제3호를 위반하 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 은 <u>금융투자소득세를</u> 납부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u>금융투자소득</u> <u>세</u>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이조에서 "제휴물류법인"이라 한

양도소득세
·.
1. ~ 3. (현행과 같음)
② 양도소득세의
<u>양도소득세를</u>
.
③ 양도소득세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세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
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 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물류 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다 른 중소기업인 법인(「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제휴상대물류 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물 류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법인 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 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 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 (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 휴상대물류법인의 주식을 처분 할 때까지 금융투자소득세의 과 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٨١ ١	⊏ vì
양도소	<u> </u>
	•
1 이 /뉜케-	al alo)
1. ~ 3. (현행3	叶 싙合)
② · ③ (현행괴	コレウ /
(Δ) (3) (3) (3) (3)	1 任合)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 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 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 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 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벤처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 · 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 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 중소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 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 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벤 처기업등의 주식을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회사인 법인 (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 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 는 제휴법인의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 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
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
례) ①

서 같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제 휴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 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 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 지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 연받을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u>금융투자소득</u> 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벤처기업 등의 주주는 제1항제3호의 계약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u>금융투자소득세를</u>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u>금융투자소득</u> 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법 일부개정법률

<u>양도소득세</u>
1. ~ 3. (현행과 같음)
② <u>양도소득세의</u>
<u>양도소득세를</u>
③ <u>양도소득세</u>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제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 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 (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 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 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 도대금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출 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 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 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 함한다)할 때까지 금융투자소득 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 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

제46조의8(수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u>양도소득세</u>

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 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3.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u>금융투자소득</u> 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u>금융투자소득</u> 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자는 제1 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 는 했으나 금융투자소득세는 납 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투자를 하지 <u>아니한 경우</u>는 제외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u>.</u>
1. ~ 3. (현행과 같음)
② <u>양도소득세</u>
<u>.</u>
· ③ 양도소득세의 -
<u>877144</u>
양도소득세를
<u>양도소득세는</u>
مار م عار <u>م</u>
<u>않은 경우</u>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 제 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 회사 또는 조합(이하 "공모부동 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지 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이하 "공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 중 거주자별 투자금 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투자 일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 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 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 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 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1. ~ 3. (생략) ② (생 략)

제87조의7 <u>(공모무농산집합투자기</u>
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u>에 대한 과세특례)</u> ①
<u>지급받는 배당</u>
<u>소득</u>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
합소득과세표준
<u>.</u>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또는 공모부동 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제 1항을 적용받는 배당소득 및 금 융투자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 수하여야 한다.
- ④ (생략)
- 1. ~ 2. (생 략)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발생 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 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 87조의4를 적용한다.
- ⑥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의 배당 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계산방 법, 원천징수의무자의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일부개정법률

③
<u>배당소득</u>
,
④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u>⑤</u>	
	배당소
트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 저 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 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 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 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 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 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 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 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 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7.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가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 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

세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
한 과세특례) ①	
<u>이자소</u> 득 또는	배
당소득	
1. ~ 7. (현행과 같음)	
<u><</u> 삭 제>	

87조의4를 적용한다.

③ (생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①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함으로 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한다.

1. ~ 3. (생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 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⑬ (현행
과 같음)
(4)
<u>양도하는 경</u>
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
1항제3호를 적용
<u>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u>
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u>하다.</u>
1. ~ 3.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 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 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 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 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 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 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 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u>아니하며</u>, 「지방세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 3. (생 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가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 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 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 87조의4를 적용한다.
- ③ ~ ⑥ 삭 제
- (7) · (8) (생 략)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 등에 대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 9로 하고, 그 이자소 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 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소 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7) · (8)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 용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 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 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적격집 합투자증권 이전은 「증권거래 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 니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투자 신탁·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 조합이 적격집합투자기구가 아 닌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귀 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집합 투자재산을 하나의 내국법인으 로 보아 해당 투자신탁 및 투자 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해당 투자합자조합은 각 사업연 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 용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 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가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 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 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 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 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 한다. 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 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 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소득 공제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5조의14를 준용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 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재형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 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 과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② 재형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도래하는 때에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3년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에 간까지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	
세) 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 ~ 4. (현행과 같음)	
②	

- <u>이자소득</u>, 배당소득 및 금융투 <u>자소득</u>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 과하지 아니한다.
- ③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저축으로 부터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 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저축 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 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 의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 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2. (생략)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③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u>.</u>
1. •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 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 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 다.

- ⑤ 삭 제
- ⑥ ~ ⑧ (생 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 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하 이 조에서 "해외상장주식"이라 한다)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 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해외 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 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추어 2017년 12월 31일까 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주식 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6)	\sim	(8)	(연	. 앵	屮	它	음)			
법률	제	186	343	<u>ਦੇ</u>	조	세	특권	ll 저	한	법
일부:	개정	법-	륟							
제91	조의	月17	(해	외	주	식트	トス	l 전	용	집
합.	早ス	- フ] -	구어]	대	한	과	세	특i	폐)
1										
					· — —					
					· — —					
					· — —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까지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 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집합투 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기 제279조제1항 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 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 호 및 제87조의14제1항에도 불 구하고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 소득금액 및 금융투자소득금액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 증권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u>제17조제1항제5호</u>
<u>배당</u>
<u>소득금액</u>
1. ·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 (생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 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이하 이 조에 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 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 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 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 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세법 _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 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 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 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 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같
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
소득과세표준
<u>.</u>
· 1.·2. (현행과 같음)

② (혀해 제3하과 간은)

- ② (생략)
-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 1. 2. (생략)
-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 할 것

가. (생략)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 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 합사채

<신 설>

다. (생 략)

- 라. 「소득세법」 제87조의6 | <삭 제> 제1항제4호에 따른 적격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국외에서 설정된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을 포함한다)
- 마. 「소득세법」 제87조의6 | <삭 제> 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 합증권
-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

	/ - 1 - 11 - 1	-1 4 \
(2)	(혂행과	71-0-1
(4)	(11 % 11	アロノ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 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 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 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라. (현행 다목과 같음)

<u>바</u>. 「소득세법」 제87조의18 <u>마</u>. 「소득세법」 제88조제3 ই ---

권상장법인의 주식 <u>사</u>. (생 략) 4.·5. (생 략)

- ④ (생 략)
-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소득금액의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 해당합계액은 이자소득등의합계액에서 제외하여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①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 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 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⑦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 득세법 1 제130조, 제148조의2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계 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⑧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 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 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 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 에서 "중도해지"라고 한다)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 즉시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
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u>⑥</u>	
<u>제130조</u>	
	·- .
<u><삭 제></u>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 부하여야 한다.

- 1. 이자·배당소득: 「소득세 법」 제14조를 적용하여 결정 된 세액
- 2. 금융투자소득: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을 곱한 금액. 이 경 우 해당 소득금액은 「소득세 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 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제8항을 적용한다.

① (생략)

① 제10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 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u>®</u>
해지된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u>⑨</u> (현행 제10항과 같음)
⑩ 제9항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 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 탁업자등은 이를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① (생략)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연장절차, 가입대상의 확인 ·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로 정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팀 일부개정법률 임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 조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7조의2제1호 또는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1 9조제9호나목 또는 제11호가목에 따른 자산,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⑪ (현행 제12항과 같음)
12
계산방법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
王) ①
<u>경우</u>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다목

또는 제9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또 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② (생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7조의 6(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같은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 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u> 양도소득세</u>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
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
제94조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
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① · 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26년 12월 3 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양도차익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라양도소득세 또는금융투자소득세를 감면하거나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아니할 수 있다.
-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 2. (생략)
- ④ ~ ⑦ (생 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 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 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양도소득세</u>
1
<u>양도소득세</u>
2.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
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출 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 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 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 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 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 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 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 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 분(상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

다.

- 1. 2. (생략)
- ② (생략)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교환대상법인의 주주등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거주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반 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 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여 야 하며, 내국법인은 해당 사유 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 금 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 액을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 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87조의24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1. ~ 3. (생략)
- ④ ~ ⑥ (생 략)

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양도소득세</u>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11
<u>1조</u>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 | 저 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 례)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 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 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등 (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 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전용계좌의 가입일부 터 10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 로 한정한다)은「소득세법」 제 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 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 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 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 하다.

- 1. 2. (생략)
- ② ~ ⑤ (생 략)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④ (생 략)
 - ⑤ 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
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
례) ①
<u>같은 법 제</u>
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
세표준
<u>.</u>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④ (현
행과 같음)
⑤

「소득세법」 제127조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 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세 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 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 ⑩ (생 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6조의2(이자·배당·금융투 자소득 비과세 · 감면세액의 추 <u>징</u>)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 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 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 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 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 조의17, 제91조의18(같은 조 제 8항 및 제9항이 적용되는 경우 는 제외한다), 제91조의19 및 제 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121조의35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 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

<u>'소늑세법」 제127조제7항</u>
· ⑥ ~ ⑩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6조의2 <u>(이자·배당소득 비과</u>
세·감면세액의 추징) ①
소득 또는 배당소득

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라계산한다.

② ~ ⑤ (생 략)

<u>종합</u>
소득과세표준
<u>같</u>
은 법 제122조)
② ~ ⑤ (현행과 같음)